

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. 11. 14 선고 2024가단2126 판결 [부동산매매대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B 주식회사

변론 종결2024. 10. 10.

판결 선고2024. 11. 14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33,076,166원 및 이에 대하여 2023. 8. 8.부터 2024. 8. 2.까지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1.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
2.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판사권순향

별지